

[별 표] <신설 2000.7.27>

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(제27조의2관련)

번 호	산출사용료의 증 가 율	납 부 할 사 용 료
1	10퍼센트 이상 ~ 2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10/100 + (증가율 - 10/100) × 300/1,000}]
2	20퍼센트 이상 ~ 5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13/100 + (증가율 - 20/100) × 100/1,000}]
3	50퍼센트 이상 ~ 1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16/100 + (증가율 - 50/100) × 60/1,000}]
4	100퍼센트 이상 ~ 2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19/100 + (증가율 - 100/100) × 30/1,000}]
5	200퍼센트 이상 ~ 5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22/100 + (증가율 - 200/100) × 10/1,000}]
6	500퍼센트 이상	전년도사용료 + [전년도사용료 × {25/100 + (증가율 - 500/100) × 5/1,000}]